



TaxNewsFlash - Transfer Pricing

[Website](#) | [Archive](#) | [Contact](#)

Transfer Pricing Newsletter

삼정 KPMG 이전가격본부(TP)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회 제공합니다.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implifying transfer pricing – updated ATO guidance](#)

호주과세당국 (ATO): 이전가격 단순화 지침 발표

호주과세당국은 이전가격문서 단순화 방안에 대한 실무 지침 (Practical Compliance Guideline (PCG) 2017/2 Simplified transfer pricing record keeping options)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지침은 특정 납세자와 국외특수관계거래와 관련한 호주 내 이전가격 보고서 (TPD) 이행의무 부담완화 목적으로 발표되었던 기존 지침에 대한 개정안입니다.

해당 지침 내에는 특정 납세자와 국외특수관계법인들의 기존 이전가격 문서화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PCG 지침은 납세자 (매출액 25 백만USD 이하), 재판매업자 (매출액 50백만 USD 이하), 국외특수관계 법인과 중요한 거래가 없는 납세자 (특정 그룹 내 서비스 및 국외 자금거래)들로 하여금 단순화된 이전가격 문서화 규정 (STPRK)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전가격문서화 규정의 완화

(STPRK 옵션 신청과 관련하여) 납세자들은 당사자들의 이전가격규정 준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자체분석을 반드시 수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호주과세당국은 PCG 2017/2 에서 납세자/국외특수관계거래에 대한

삼정 KPMG 이전가격본부

17 April 2017

KEY CONTACTS

[강길원 본부장](#)

(Tel: 02-2112-0907)

[김상훈 상무](#)

(Tel: 02-2112-7939)

[백승목 상무](#)

(Tel: 02-2112-0982)

STPRK 옵션 신청자격 심사목적으로 별도의 인력을 배정하지는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는 납세자들이 STPRK 옵션적용을 통해 이전가격 문서화 (STPRK 옵션은 2017년 9월부터 시행 예정) 에 대한 부담 완화를 꾀할 수 있음을 의미 합니다.

향후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 감소

또한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 대상인 납세자들은 STPRK 옵션 적용을 통해 호주과세당국의 개별기업보고서 상의 Part A (국외특수관계거래에 대한 자세한 정보) 그리고/혹은 Part B (주요 국외특수관계거래에 대한 계약서 사본 및 APA 등) 에 대한 제출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납세자들은 호주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할 주요 정보의 취합 및 제출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STPRK 옵션을 통해서 납세자들은 향후 이전가격 제출의무와 관련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Germany: Discussion draft,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requirements

독일: 이전가격 보고서의 조건에 대한 논의

EU 의 사무지원 지침 개정안 및 소득이전 및 세원잠식 방지를 위한 추가법안 (Anti-BEPS-I law) 시행과 함께 독일 내 신규 이전가격 문서화 의무조항들이 도입되었습니다. 동 법안은 3단계 접근방법을 통한 이전가격 문서화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정형화된 정보를 포함한 보고서 (통합기업 보고서)
- 현지 및 법인들에 대한 보고서 (개별기업 보고서)
- 특정국가 내에서 수행하는 활동들에 대한 보고서 (국가별 보고서)

독일 연방 재무국은 현존 규정 개정 및 신규 도입된 Anti-BEPS-I law 로 인한 법적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목적의 협의초안 (discussion draft)를 최근 공개하였습니다. 이전가격 문서화 구조의 조정을 통해 통합기업보고서와 개별기업보고서 간의 차이를 두게 되었습니다.

상기 변경 사항들은 2017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적용직후에는 이전법령들을 동시에 철회할 예정 입니다.

요약

이번 협의초안은 아래 세 가지 주요 변경사항들을 포함합니다.

- 중요한 수행 기능들과 부담하는 위험들에 대한 분석 사항들이 포함

되어야 하며, 해당 기능 또는 위험들이 배부된 경위에 대한 자료 또한 포함되어야 함. 거래당사자간 수행하는 기능과 부담하는 위험을 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분석근거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주관적 및 입증 불가능한 평가를 방지하기 위함임.

- 납세자는 정상가격 산출을 위한 비교가능회사들에 대한 분석 수행 시에 사용한 데이터 베이스 의 구성 및 산출 방법에 대해 투명하게 기술하여야 함. 이는, 과세당국이 납세자가 수행한 분석에 대한 검증 및 재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임.
- 통합기업 보고서의 새로운 섹션이 추가되었으며 통합기업 보고서의 작성범위를 명시하는 첨부자료가 포함됨. 해당 첨부자료에는 조직 구조, 공급사슬과 관련된 설명, 주요 용역거래, 요약된 기능분석, 중요한 구조조정거래, 무형자산에 대한 전략, 그리고 국외특수관계법 인간 재무활동 등 통합기업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요소들이 담김.

2017 U.S.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Deadline Affected by New IRS Rules

미국: 신규 IRS 규정 도입이 이전가격보고서 (TPD) 구비 기한에 미치는 영향

미국 법인세법 상에서 C Corporation으로 분류되는 기업들은 미국 법인세 신고서 (the Form 1120, U.S. Corporation Income Tax Return) 제출 시 미국 이전가격 보고서 (U.S.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를 함께 구비할 경우, 과태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상당 수 C Corporation 들의 Form 1120 의 제출기한이 변경됩니다. 본 기사의 목적은 C Corporation 들이 새로 변경되는 법인세 신고기한을 고려해 이전가격보고서 작성시기를 조정하여 적절한 과태료 감면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각종 세제들의 납세기한 재정비를 통해 보다 원활한 관련 정보흐름을 제공하자는 취지아래, 미국 내 기업들에 대한 납세기한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IRS 상의 법인분류에 따른 세제 신고기한 변경사항들은 현재 순차적으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2017년 1월 중순, IRS 는 많은 기업들에 대한 세제 신고 연장기한 (extended due date) 를 변경하였습니다. 그 결과, C Corporations 로 분류된 기업들의 경우, 법인세 연장 신고기한이 기존 9월 15일에서 1달 늦춰진 10월 15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변경 안으로 인해 법인세 연장신고기한은 작년에 새로 시행된 일반 신고기한인 4월 15일과 일관성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신고 연장기한 변경 내용은 영구적 (permanent)이며 2015년 12월 31일 이후의 과세연도에 적용됩니다. 앞으로 C corporation 들은 사업연도 종료 후 네 번째 달의 15일까지 (6개월 연장가능) 법인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6월 30일이 사업종료일

인 C corporation 의 경우 기존과 동일한 9월 15일까지 법인세 신고의무를 이행해야 하되 7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많은 회사들이 9월 15일 전후로 법인세 신고를 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이전가격보고서가 *제출기한 (later due date)* 이 아닌 *법인세 신고일 (filing date)*까지 반드시 구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법인세 연장 신고기한을 활용해 10월 15일까지 혹은 그 이전에 법인세 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이전가격보고서 작성계획을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AICPA 는 기업 형태 (Partnerships, C Corporations, S corporations) 및 세제 별로 변경 제출기한 및 연장기한을 표로 정리해 다음 [링크](#)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많은 제출기한들이 변경되었지만 모든 기업들에 대한 제출기한이 변경된 것은 아니기에, 새 제출기한들을 잘 숙지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동시에, 회사들은 이전가격 전문가들과 논의하여 회사의 법인세 신고일을 결정하고 이전가격보고서 작성계획을 그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IRS Sees Jump in Withdrawn APA Application in 2016 \(Bloomberg BNA TP Report Vol.25, No.23, p1306\)](#)

미국 (IRS): 2016년 APA 신청 철회 급증

연례보고서 상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6년 한해 기업들이 IRS 와의 APA 를 철회한 사례 수가 지난 10년동안 가장 많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dvance Pricing and Mutual Agreement Program (APMA) 이 3월 27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APA 신청철회 건 수는 총 24 건으로 2002년 (26건)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14년 APA 신청철회 건수는 1 건이었으며 2015년 APA 신청철회 건수 또한 총 10건으로 2016년의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APMA의 John Hughes 가 3월 31일 밝힌 바에 따르면 APA 신청철회의 배경에는 "one-off instances", 즉 APA 신청대상인 사업체가 청산되는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John Hughes 는 EY webcast 에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 APA는 "의미가 없어진다"고 말했습니다.

한 전문가는 많은 APA 신청철회 사례들은 단순히 합의실패에 기인한다고 주장합니다. 미국 워싱턴 KPMG LLP 의 Steve Wrappe 는 3월 29일 Bloomberg BNA 에 보낸 이메일에서 "납세자들과 다른 담당자들과의 논의경험에서 미루어볼 때, 납세자와 APMA가 근본적인 의견차이를 보이는 사례들이 있었다고" 고 말했습니다.

긴 소요기간

Huges 는 APA 신청절차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인정하며 이는 APA

신청철회의 또 다른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청절차에 대한 불만족이 APA 신청철회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APA 가 진행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납세자가 신청철회 결정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라고 Huges 는 말합니다. “이러한 APA 신청철회사례들에 비추어 수정이 필요한 부분들은 수정함으로써 APA 진행절차를 개선하고 싶습니다.”

기업들의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공시보고서 상의 데이터 또한 APA 의 긴 소요시간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어바인에 소재한 Edward Lifesciences Corp. 는 2017년 공시보고서에서 2014년 이후 미국-스위스 간 APA 신청을 아직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24 건의 APA 신청철회건수들 중 15건은 쌍방 APA, 나머지 9건은 일방 APA였습니다. 일방 APA는 하나의 과세당국이 개입하는 반면, 양자 혹은 다자간 APA 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과세당국들이 개입할 수 있습니다.

Bloomberg BNA는 매사추세츠 주 캄브릿지에 소재한 바이오테크 회사인 Biogen Inc. 가 2016년 6월 덴마크-미국 양자간 APA 협상에서 철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APA 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Huges 는 2016년 APA 체결건 수 감소- 2015년 110개보다 감소한 86개- 와 신청철회 증가에도 불구하고, APA 는 여전히 국제조세 이슈 해결을 위한 좋은 해결책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는 “APA 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이중과세문제를 해소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이라고 말합니다.

Ernest & Young LLP 의 금융서비스 부문의 executive director 이자 이번 webcast 의 패널로 참석한 David Farhat 역시 이러한 관점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는 APA 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증가하였으며 아직까지 회사들이 “APA 를 하지 않겠다” 는 반응을 보이는 등의 급격한 변화는 없었다고 말하였습니다.

현재 Bloomberg BNA가 파악하고 있는 APA 신청을 기다리고 있는 회사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캘리포니아 주 산타클라라에 소재한 레이저 시스템 제조업체인 Coherent Inc. 는 2월 공시보고서에서 미국-한국 간 APA 협상 진행 중 이라고 밝혔습니다.
- Contran Inc. 는 미국-독일 APA 가 2017년에 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코네티컷 주 그린위치에 소재한 장비대여업체인 United Rentals Inc. 는 올해 현재 캐나다와 진행중인 APA 신청절차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Back to top](#)

[Privacy](#) | [Legal](#)

INTERNAL USE ONLY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17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kpmg.com/socialmedia



kpmg.com/app

